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19일,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3.)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3.20.)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4.29.)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원택 의원)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 「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2조 삭제).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한우농가는 자급률 저하와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향후에도 CPTPP¹⁾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²⁾,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우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축산법」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우산업만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축산 분야에서 한우산업에 대해서만 특별법 제정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고, 다른 축종 분야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하여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1)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협력체제

2) 전국한우협회는 CPTPP 가입 시 15년간 한육우 2조 880억원, 한우 1조 9,890억원의 생산감소를 추정하고 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축산법」상 동 조
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8. 기타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u>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u> <u>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u>	<u><삭 제></u>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 · 참여방법 및 참여 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 조건 ·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 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

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